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br>번호 | 2324 |
|----------|------|

2021년 6월 21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4월 2일, 봉양순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1년 4월 6일
- 다. 상정일자 : 제30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1년 6월 21일 상정·수정안 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봉양순 의원)

### 가. 제안이유

- 현재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국공립 유치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20%) 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본부의 위임관리를 원하는 기관에 한해서는 수도요금 감면 대신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음수대를 별도 관리해 주고 있음.

2020년말 기준 상수도사업본부의 위임관리를 받고 있는 기관은 약 43% 수준에 달하고 있는 바, 수도요금 감면 대신 위임관리로 일원화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음수대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돗물 음용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일부 수도요금 감면 조항의 각 호가 일부 삭제되었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유명무실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현행화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분할납부 신청을 원하는 수도사용자들이 대부분 과다하게 발생한 수도요금을 전액 일시 납부하는 것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호소하고 있는 만큼, 분할납부 처리에 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분할납부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학교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삭제함 (안 제31조제1항제6호)
- 수도요금 감면 조항을 정비함 (안 제31조제1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4.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이재효)

### 가. 개요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학교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조항 삭제 등을 포함한 해당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1) 음수대 설치 학교 등의 수도요금 감면 규정 삭제(안 제31조제1항제6호)
  - 서울특별시 관내 학교 등에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는 수돗물 음용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06년 도입 이후 2021년 3월말 기준 1,301개소에 20,550대의 음수대가 설치되어 사용 중에 있음.

#### <학교 아리수음수대 설치 현황('21. 3월말 기준)>

(단위: 개교)

| 구 분            | 합 계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기 타         |
|----------------|-------------------|----------------|----------------|----------------|-------------|
| 설치대상           | 1,363             | 606            | 387            | 320            | 50          |
| 설치학교<br>(설치대수) | 1,301<br>(20,550) | 581<br>(8,407) | 381<br>(6,649) | 299<br>(5,136) | 40<br>(358) |
| 미설치학교          | 62                | 25             | 6              | 21             | 10          |

- 또한, 학교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정수기를 철거하고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음용하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20%) 규정을 2008년 9월에 마련하였고, 2015년 7월에는 감면 대상을 확대<sup>1)</sup>하였음.
- 2016년 9월에는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상수도사업본부가 용역 업체와 계약을 통해 학교 음수대를 위임 관리해 주는 경우에 한해 수도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sup>2)</sup>하도록 한 바 있는데,

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과 국공립 유치원(「유아교육법」 제7조)

이는 당시 학교 음수대의 자체관리 한계를 인정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 해당 조례 개정 이후 학교 음수대 자체관리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2020년말 기준) 자체관리 비율은 58%(754건)에 달하고 있고 특히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관리도 해당 학교와 상수도사업본부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음수대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상수도사업본부가 지향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교 음수대 관리를 상수도사업본부 위임관리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조례 개정으로 음수대 관리 일원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학교 아리수음수대 관리 현황>**

(단위: 개교)

| 구 분      |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계        |      | 1,273 | 1,290 | 1,299 | 1,301 |
| 학교관리     | 자체관리 | 835   | 820   | 816   | 754   |
|          | 용역관리 | 170   | 122   | 115   | 110   |
| 본부관리(위임) |      | 268   | 348   | 368   | 437   |

**2) 수도요금 감면규정 정비 (안 제31조제1항)**

- 현행 조례 제31조제1항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대상의 경우 그 유효기간이 경과<sup>3)</sup>되거나 삭제된 경우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이 조례를 알기 쉽게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2)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3)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 요지

-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21.5.20 개정) 사항 반영 및 조문 재정비를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br>번호 | 관련<br>2324 |
|----------|------------|

제안년월일: 2021년 6월 21일

제안자: 환경수자원위원장

## 1. 수정이유

- 동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이후 제300회 임시회 시 가결되어 신설된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사항의 반영 및 조문 재정비를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

## 2. 주요 골자

- 현행 제31조제1항제11호('21.5.20 개정) 반영 및 조문 재정비  
(안 제31조제1항제1호 ~ 제9호)

## 3. 참고사항 : 생략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1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천재지변 지역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기본요금
5.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등
6. 전자고지 신청 수도사용자등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8.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2021년 7월 납기분부터 12월 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욕탕용에 한해 적용)
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9.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

10. ~ 12. (생략)

1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2021년 7월 납기분부터 12월 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욕탕용에 한해 적용)

② (생략)

<삭제>

7. ~ 8. (현행 제10호와 및 제11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8.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2021년 7월 납기분부터 12월 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욕탕용에 한해 적용)

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개정안과 같음)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천재지변 지역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기본요금
5.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등
6. 전자고지 신청 수도사용자등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8.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2021년 7월 납기분부터 12월 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욕탕용에 한해 적용)
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천재지변 지역</u></li> <li>2. <u>무허가건물 철거지역</u></li> <li>3.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에 따른 <u>수급권자</u></li> <li>4. <u>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기본요금</u></li> <li>5. <u>삭제 &lt;2012.15&gt;</u></li> <li>6. <u>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다만, 중복 감면의 경우 높은 감면을 적용)</u></li> <li>7. <u>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등</u></li> <li>8. <u>전자고지 신청 수도사용자등</u></li> <li>9. <u>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u></li> <li>10. 「<u>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u>」</li> </ol> | <p>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br/>-----<br/>-----<br/>-----<br/>-----<br/>-----<br/>-----<br/>-----</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천재지변 지역</u></li> <li>2. <u>무허가건물 철거지역</u></li> <li>3.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에 따른 <u>수급권자</u></li> <li>4. <u>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기본요금</u></li> <li>5. <u>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등</u></li> <li>6. <u>전자고지 신청 수도사용자등</u></li> <li>7. 「<u>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u></li> <li>8. 「<u>소상공인기본법</u>」 제2조에 해당하는 <u>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2021년 7월 납기분부터 12월 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옥탕용에 한해 적용)</u></li> <li>9. <u>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u></li> </ol> |

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1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  
하는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  
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20  
21년 7월 납기분부터 12월 납기분  
까지 일반용 및 옥탕용에 한해 적용)

1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  
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